

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의안 번호	8-280
----------	-------

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, 2019.5.9. 시행)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주요내용

가. 근거 법령 변경사항 반영함.(안 제1조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변경

나. 금고 지정 절차 중 일부 사항을 신설함. (안 제11조 제5항)

-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
- 다. 협력사업비 운영 중 일부 사항을 변경함. (안 제15조 제2항)

-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

라. 협력사업비 운영에 대한 시장의 보고 사항을 신설함. (안 제15조 제3항)

-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규모의 20%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

마.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변경함. (안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1, 별표2)

바. 그 밖에 주민이 알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 정비 (안 제2조)

- ‘계리’ 대신 ‘회계처리’ 로 용어 변경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○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: 붙임4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9. 9. 27. ~ 2019. 10. 17. (20일)

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붙임5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붙임 1 >

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” 를 “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” 으로 한다.

제2조 제1호중 “「은행법」” 을 “「은행법」과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제1항 단서” 로 하고, 제3호 중 “계리” 을 “회계처리” 로 한다.

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협력사업비 집행내역” 을 “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·집행내역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금고가(복수금고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,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1.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
2.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% 이상 증액된 경우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예산법무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공정조세과장 정 규 상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입관리팀장 장 유 경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장 유 경 (행정 2185)

[별표 1]

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(제4조 관련)

항목	세 부 항 목	배 점	비고
계	총 계	100	
1.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소 계	27	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- 국외평가기관 - 국내평가기관 ※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8점)을 평가	8 (4) (4)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- 총자본비율 (안정성) ※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(6점)로 평가 - 고정이하 여신비율 (건전성) - 자기자본이익률 (수익성) - 유동성커버리지비율 (유동성) *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(신협, 농·수·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에 따름 * 금융감독원,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	19 (6) (6) (5) (2)	
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소 계	20	
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.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.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	(7) (6) (4) (3)	
3. 시민이용 편의성	소 계	21	
	가. 관내지점의 수, 관내 무인점포 수, 관내 ATM설치 대수 ※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(8) (6) (7)	
4. 금고 업무 관리 능력	소 계	25	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※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(6) (8) (8) (3)	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	소 계	7	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.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※ "지역사회에 대한 기여"는 '실적'으로만 평가, "시와의 협력사업"은 '계획'으로만 평가	(5) (2)	

[별표 2]

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

I. 일반원칙

1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.
2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,
다만, 항목 2(안산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, 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 사업)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함

II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
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(27점)
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(8점)

- 평가기준 : 공인된 국내·외 신용평가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별로 비교·평가

- 국외평가기관(4점)

- 국내평가기관(4점)

- ※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 8점을 평가

○ 평가방법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

-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정
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19점)

-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·평가하여 안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되,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·확인

○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

- (1) 총 자본비율(안정성, 6점)

- ※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6점)로 평가

(2) 고정이하 여신비율(건전성, 6점)

(3) 자기자본 이익율(수익성, 5점)

(4) 유동성커버리지 비율(유동성, 2점)

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(신협, 농·수·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감독 기관(금융감독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에 따름

※ 금융감독원,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

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(20점)

가. 정기에금 예치금리(7점)

○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에금의 기관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(6점)

○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다. 시에 대한 대출금리(4점)

○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라. 정기에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(3점)

○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에금 만기경과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※ 정기에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%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

3. 시민이용 편의성(21점)

가. 관내 지점의 수, 관내 무인점포 수, 관내 ATM설치 대수(8점)

○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하되,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※ 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

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(6점)

○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(7점)

○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납부 편의성 제고방안, 정보

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(전자납부 등) 증진방안,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4. 금고업무 관리능력(25점)

가.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(6점)

-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·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(8점)

-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(8점)

- 금고 관련 세입·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(안)을 제출받아 비교·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

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(3점)

-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(7점)
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(5점)

-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나.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(2점)

- 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안산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,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
<p>1. "금고"란 안산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「은행법」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.</p>	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은행법」과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제1항 단서 ----- -----.</p>
<p>2. (생략)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3. "특별회계"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<u>계리</u>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된 회계를 말한다.</p>	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회계처리 ----- ----- -----.</p>
<p>4. ~ 6. (생략)</p>	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제11조(금고지정 절차) ① ~ ④ (생략)

<신설>

제15조(협력사업비 공개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<신설>

제11조(금고지정 절차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각 금융기관의 순위 및 총점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5조(협력사업비 공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
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·집
행내역-----
-----.

③ 시장은 금고(복수금고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,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1.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
2.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% 이상 증액된 경우

3. 시민 이용 편의성	소 계	21
	가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	7
	나. 관내 지점의 수 및 시민이용 편리성 *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	6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8
4. 금고 업무 관리 능력	소 계	22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5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7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 능력	7
	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3
5. 지역 사회 기 여 및 시와 협 력사업	소 계	9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	5
	나.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* “지역사회에 대한 기여”는 ‘실적’으로만 평가, “시와의 협력 사업”은 ‘계획’으로만 평가	4

3. 시민 이용 편의성	소 계	21
	가. 관내 지점의 수, 관내 무 인점포 수, 관내 ATM설치 대수 및 시민이용 편리성 *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	8
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	6
	다.	7
4. 금고 업무 관리 능력	소 계	25
	가.	(6)
	나.	(8)
	다.	(8)
	라.	(3)
5. 지역 사회 기 여 및 시와 협 력 력	소 계	7
	가.	(5)
	나. *	(2)

현행	개정안
<p>[별표 2]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</p> <p>I. 일반원칙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. 다만, 항목 2(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), 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)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함</p> <p>II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</p> <p>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(31점)</p> <p>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(10점)</p> <p>○ 평가기준 : : 공인된 국내·외 신용평가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·평가</p> <p>○ (생략)</p> <p>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21점)</p> <p>○ (생략)</p> <p>○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</p> <p>(1) 총 자본비율(안정성, 7점)</p> <p>(2) 고정이하 여신비율(건전성, 7점)</p> <p>(3) 자기자본 이익율(수익성, 6점)</p> <p>(4) <u>국내 자본비율(공공성, 1점)</u></p>	<p>[별표 2]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</p> <p>I. 일반원칙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2.(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,</p> <p>II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</p> <p>1.(27점)</p> <p>가. (8점)</p> <p>○ 평가기준 : - 국외평가기관(4점) - 국내평가기관(4점)</p> <p>※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 8점을 평가</p> <p>○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(19점)</p> <p>○ (현행과 같음)</p> <p>○</p> <p>(1)(....., 6점)</p> <p>※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6점)로 평가</p> <p>(2)(....., 6점)</p> <p>(3)(....., 5점)</p> <p>(4) <u>유동성커버리지비율(유동성, 2점)</u></p> <p>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<u>해당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(신협, 농·수·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감독기관(금융감독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에 따름</u></p> <p>※ <u>금융감독원,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</u></p>

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(17점)
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점)

○ (생략)

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(5점)

○ (생략)

다. (생략)

○ (생략)

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(2점)

○ (생략)

3. (생략)

가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(7점)

나. 관내 지점의 수 및 시민이용 편의성(6점)

※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

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(8점)

○ (생략)

4. 금고업무 관리능력(22점)

가.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(5점)

○ (생략)
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(7점)

○ (생략)
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(7점)

○ (생략)

라. (생략)

○ (생략)
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(9점)

가. (생략)

○ (생략)

나.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(4점)

○ (생략)

2. (20점)

가.(7점)

○ (현행과 같음)

나.(6점)

○ (현행과 같음)

다. (현행과 같음)

○ (현행과 같음)

라.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(3점)

○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만기경과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※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%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

3. (현행과 같음)

가. 관내 지점의 수, 관내 무인점포 수, 관내 ATM기 설치대수 (8점)

※
.....

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(6점)

○ (현행과 같음)

다.(7점)

○ (현행과 같음)

4.(25점)

가.(6점)

○ (현행과 같음)

나.(8점)

○ (현행과 같음)

다.(8점)

○ (현행과 같음)

라. (현행과 같음)

○ (현행과 같음)

5.(7점)

가. (현행과 같음)

○ (현행과 같음)

나.(2점)

○ (현행과 같음)